

##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심 사 보 고

#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9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9. 26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9. 25

(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임 양 환

나. 개정사유

-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·명칭운용등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(행정자치부)에 의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,
- 기구 개편에 따른 분장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“기획예산실” 명칭을 “기획감사실”로 변경(안 제3조)
- 총무과 소관업무중 “감사” 관련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(안 제3조)
-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중 “정보통신” 관련업무를 총무과로 이관(안 제3조)
- “종합민원처리과”를 “종합민원과”로 명칭변경(안 제3조)

#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“기구설치·명칭운용등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”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기구명칭과 업무를 조정

기 위한 개정조례안임.

- 행정기구의 명칭은 조직운영원리에도 맞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겠으며 특히, 구조조정이후 기구명칭이 자주 변경됨으로 인하여 행정내부에서 조차 내용을 잘 몰라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음에 주목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여 기구를 설치하고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,
- 본 조례의 개정내용중 전산·통신에 관한 업무가 기획부서에서 총무부서로 이관되는바, 부서간에 업무의 량을 조정하는것도 바람직 하나 하겠지만 업무의 기능과 성질, 조직내부의 계통에 맞는 통일성 유지등의 관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- 행정자치부의 “기구명칭표준화(안)”의 내용을 준용하였으며 조례, 규칙심의회외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# 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#### 5. 토론요지

- 김성인 의원 : 상부의 지시에 의존한 행정기구 개편만 할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심을 일괄 조사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를 개편토록 하기위해 부결요청
- 민용기 의원 : 금번 안건은 우선 시행토록 조치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연말까지 조사하여 개편토록 하도록하고 원안가결 요청
- 위원장 :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여 가.부 결정

#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

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중 “기획예산실”을 “기획감사실”로 “종합민원처리과”를 “종합민원과”로 한다.

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4조중 “종합민원처리과”를 “종합민원과”로 한다.

### 1. 기획감사실

- 군정의 기획·종합·조정에 관한 사항
- 군정시책에 관한 사항
-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
- 국제교류 업무 종합기획·조정에 관한 사항
-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
-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
- 지방채·기채·일시차입·채부부담행위에 관한 사항
- 투자의 심사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
- 군 감사행정에 관한 사항
- 경영수의 사업에 관한 사항
- 주요시책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- 목표관리제 업무에 관한 사항
- 공약사항 처리분석에 관한 사항
- 군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- 조례·규칙의 심사 등 자치법규 관리
- 쟁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
- 공보 계획에 관한 사항
- 언론보도 등 언론에 관한 사항
- 국·도·군정 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

## 2. 총무과

- 서무 및 보안·복무단속에 관한 사항
- 문서수발·통제 및 보존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
-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
- 통계에 관한 사항
- 행정사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
- 직제·정원·인사에 관한 사항
- 공무원의 교양 및 복리에 관한 사항
-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-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
- 여론 및 건문보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
-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국민운동 시책에 관한 사항
-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- 군민 의식교육에 관한 사항
- 민방위 및 민방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- 민방위대의 조직·편성·동원에 관한 사항
-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
-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
- 전산·통신·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전산·통신·보안에 관한 사항
-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-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
-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현행	개정안
·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	· .....
· 국민운동 시책에 관한 사항	· .....
·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	· .....
· 국민 의식교육에 관한 사항	· .....
· 민방위 및 민방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	· .....
·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	· .....
· 민방위대의 조직·편성·동원에 관한 사항	· .....
·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	· .....
·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	· .....
· <u>전산·통신·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</u>	(신설)
· <u>전산·통신보안에 관한 사항</u>	(신설)
· <u>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</u>	(신설)
· <u>전산교육에 관한 사항</u>	(신설)
· <u>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</u>	(신설)
· 그 밖의 다른 성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	· .....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<u>종합민원처리과 (기재생략)</u>	4. <u>종합민원과 (현행과 같음)</u>
5 ~ 11 (생략)	5 ~ 11 (현행과 같음)